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종합감사 -

2022. 11. .



♠ 처분요구일람표

1.	경북산업용●● 규제자유특구 ●●●●● 제작·설치용역 기간 (주의) 연장 부적정	.....	3
2.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주의)	.....	5
3.	징계양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	7
4.	관외출장 여비 부적정 수령 (시정)	.....	14
5.	용역 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	16
6.	직원 복무관리 소홀 (시정)	.....	18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경북산업용●● 규제자유특구 ●●●●●● 제작·설치용역 기간연장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경북산업용△△ 규제자유특구 ㉠㉠㉠㉠㉠ 제작·설치용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 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1.3/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연장은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 제작·설치용역을 ●●엔터테인먼트와 계약(20○○.○○.)하여 사업추진 중 자재 불량 및 시공 부적정 등으로 전시 바탕목재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바탕목재를 재시공 하는 시일이 소요되자 계약상대자인 ○○엔터테인먼트는 용역기간 초과에 대한 사유가 용역사 측에 있음에도 용역기간을 ◆◆일 연장 요청하여 변경계약을 완료하였다.

위 용역 업무담당자는 용역기간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 등에 따른 명확한 연장사유가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그런데 계약상대자의 이유 있는 책임(자재 불량 및 시공 부적정 등)임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용역기간을 부적정 하게 연장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 인테리어 공사 등 8건의 시설공사를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 검사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2019. 1월 이후 하자검사 대상 시설 공사 8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하자검사 사무를 위임하지 않는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하자검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징계양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20○○. ○. ○○. 부터 ○. ○. 까지 “20○○년 ○월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결과(신고사항)와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결과 ○○○○○○ ○○○○팀 ○○○ 연구원에 대한 경징계 요구 및 20○○. ○. ○○.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 1. 징계양정 부적정

「인사규정」 제39조에 따르면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징계규칙」 제4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직원징계의결요구서 등<sup>1)</sup> 관계 자료를 첨부 하고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징계양정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징계요구 양정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배임,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비리 및 징계의결 요구기관에서 중점사정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1) 직원징계의결요구서, 직원인사기록카드 사본, 확인서,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빙자료,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관계규정 및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징계요구권자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르면 ○○○ 연구원은 프로젝트 r&d과제 추진을 위한 재직자 Skill-up 교육 및 프로젝트 r&d 과제 보완을 위한 담당자 회의를 추진하면서 20○○. ○. ○○. 과 20○○. ○. ○○. 등 2회 모두 법인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하여 출장 신청 후 기타 업무처리 등을 사유로 해당출장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 팀장의 허위 출장복명 및 여비신청을 통해 부당한 출장비(○회, ○○○,○○○원)를 수령하였고, 자체감사가 시작된 후(출장 여비 지급 1개월 이후)에야 본인에게 출장비가 지급되었음을 인지했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업무 추진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20○○. ○. ○○. 직원 징계의결 요구서가 첨부된 징계요구(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징계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에 의거 비위 유형은 “1. 성실의무 위반, 다. 직무태만에 해당” 되므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또한 20○○. ○. ○○.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 연구원은 출장비 부당 수령 건 인데 이 건은 징계를 주기보다 경고나 주의가 합당할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경중을 봤을 때 주의 처분이 적당하다는 검토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징계의결서에는 직무에 성실한 자세로 장기근속(ⓁⓁ년)에 따른 경북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징계요구권자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징계규칙」 제13조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1)에 따르면 이 건 허위 출장 및 여비 부당수령의 경우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징계양정기준 판단인 “1. 성실의무 위반, 다. 직무태만에 해당” 된다는 경징계 의결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당해 징계의결요구<sup>2)</sup> 건에 대해 「징계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 유형인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유용 및 업무상 배임” 에 따라 징계양정을 하여야 하며,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구분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양정의 감경<sup>3)</sup> 대상<sup>4)</sup>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2. 부당수령 여비 가산징수 미 조치 부적정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여비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 에 따르면 여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1)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2) 허위 출장 및 여비 부당수령  
 3) 감경된 징계양정

제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해 강 정 감 경	해 임 강 정 감 경 불 문(경고)
면 임 등 직 통 책	임 등 직 통 책

- 4) 표창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칙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팀-□□□□(2021. ⊕. ##.)호에 따르면 ⊕⊕⊕ 연구원이 부당 수령한 여비(○○,□□□원)를 환급할 것을 조치 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나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징수 부분은 빠져 있으며, 감사담당자 확인 결과 현재까지도 미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 연구원이 부당 수령한 여비에 대해 2배 가산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 「징계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부당 수령한 여비에 관련해서는 미 조치된 2배 가산징수액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 ② 「직원 훈계 등에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관련자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관외출장 여비 부정청 수령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㉞㉞㉞㉞㉞㉞
내 용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여비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주차비, 숙박비 영수증 등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출장 여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에 따라 여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및 제31조(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68호)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의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21.12.9.)고 되어 있고, 운임에 대하여 편도 영수증만 증거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왕복운임이 명백하게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왕복운임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또는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sup>1)</sup>가 없으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건 ㉡㉢,㉣㉤원의 여비를 지급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 ① 증거서류 없이 지급된 출장비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 ② 「직원 훈계 등에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관련자 ㉠㉡와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1) 각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영수증, 버스·철도 운임표 등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 계약체결 부적정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경북○○△산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을 위한 전략바이어 수출상담회 및 유럽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집행지침」Ⅱ. 예산편성 원칙에 따르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조달·구매 예산은 수의 계약 축소 및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용역·물품·기타의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용역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전략바이어 수출상담회 및 유럽시장 진출 전략설명회를 추진하면서 계약담당부서와 어떠한 협의 없이 사전품의를 하였고,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한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채 선정업체 외 다른 업체(2개소)의 비교 견적 서류만으로 지출하였다.

그 결과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확대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절차를 무시하고 부적절 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 ② 「직원 훈계 등에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관련자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직원 복무관리 소홀
소 관 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 일의 능률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 1. 유연근무제도 운영 부적정

「복무규정」 제5조,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원장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대가 변경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는 주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및 근무시간 선택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급 부서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출·퇴근 확인 및 복무점검 실시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육아, 원거리 출퇴근 등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역량개발 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되 유연근무

신청자의 출·퇴근 확인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유연근무제 실시 대상자는 선택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유연근무 실시자의 근무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1건의 출·퇴근 기록이 누락 되는 등 유연근무제 기본방침을 준수하지 않아 유연근무제의 기본취지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연가제도 운영 부적정

「복무규정」 제27조제1항4에 따르면 소속부서장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1)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어, 건강검진 재검에 따른 공가사용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도 2022.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건강검진 재검에 대한 공가사용이 불가능한 직원이 특수건강검진대상자와 동일하게 공가를 사용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연가관리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1)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2000.7.1. 폐지 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조치할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직원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부당 수령한 연가보상비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 ② 「직원 훈계 등에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관련자 □□□과 ΦΦΦ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